

무고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I. 특징

- 유형 분류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세분화
 - 특별구성요건의 구분 기준인 무고의 대상 죄명에 따라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유형 분류
- 다른 양형기준안에서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 양형인자의 구분 및 복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을 유지
 - 가중/감경인자와 특별/일반인자로 구분
 - 복수의 특별인자 평가를 위한 구체적 원칙 제시
-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규범적 조정을 반영
 - 적절한 기본영역 제시와 균형 있는 가중, 감경영역 설정
 - 경험적 분석에 의해 산출된 형량범위를 기초로 상한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규범적 조정을 가미
- 집행유예의 일반적 기준 제시
 -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와 주요/일반 참작사유로 구분
 -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원칙 제시

II. 대상범죄

1.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사항¹⁾

- 범죄의 전형성
 - 양형기준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적정한 양형을 확보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경험적 및 규범적 접근방식에 의한 양형기준 설정 가능성
 -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과거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규범적 접근방식을 적절히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동원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범죄를 대상으로 정해야 함

2. 무고범죄 일반

죄 명	적용법조	법정형
무고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	특가법 제14조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무고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가보안법상 각 조에 정한 형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등

-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무고를 한 경우에 국가보안

1)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기준안 제1차 공청회 자료집, 52쪽

법의 해당 조문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이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고자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의 본범과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조항으로 형법상 무고죄와는 규정 방식이나 형량범위가 현저히 구별되므로 무고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

-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상 무고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처벌만이 규정되어 있어 양형기준의 설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

4. 관련 통계

- 지난 4년 동안 무고범죄의 죄명별 빈도 수(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포함)는 다음과 같음

출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

순번	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평균
1	무고	1,756	1,601	1,288	1,296	5,941	1,485
2	특가법상 무고	7	6	5	1	19	5
합계		1,763	1,607	1,293	1,297	5,960	1,490

- 특가법상 무고죄

- 특가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특가법 제14조), 비록

사건 빈도 수가 적기는 하나, 형법상 무고죄와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특성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와 양형인자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가법상 범죄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제1차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대상범죄는 형법상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죄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III. 범죄유형 분류

1.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 무고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법자가 형법 및 특별법상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음

죄 명	적용법조	법정형
무고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	특가법 제14조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고범죄의 보호범익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분류를 통해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비교법적 검토

가. 미국 연방

- 우리나라의 무고죄와 일치하는 처벌규정은 없음
- 다만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47장 제1001조 (a)항은 허위진술죄 (False Statement)를 규정
 - 연방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관할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1) 기망, 책략, 계책에 의하여 중요한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혹은 숨기거나, (2) 중요하게 잘못되었거나, 허위이거나, 기망적인 진술이나 표현을 하거나, (3) 중요하게 잘못되었거나, 허위이거나, 기망적인 진술이나 기재를 담은 거짓 진술서나 문서를 만들거나 그러한 정(情)을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연방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은 다음과 같음
 - USSG 2B1.1
 - 절도, 기타 다른 형태의 절도, 장물 관련 범죄, 재물손괴,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와 함께 규정
 - 기본 범죄등급 : 7 (0개월 ~ 6개월, USSG에 언급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거나, 법정최고형이 20년 이상인 경우)
 - 6 (0개월 ~ 6개월, 기타)

나. 영국

- 우리나라의 무고죄와 일치하는 처벌규정은 없음
- 다만, common law상 인정되는 범죄로서 사법절차방해죄가 있음
 - 증인에 대한 협박, 매수, 증거은닉, 무고 등 광범위한 유형이 이에 포섭되며, 최대 선고형은 무기형 또는 벌금임
- Goodwin case(1989)²⁾: 20세된 여자 피고인이 한 남자를 지목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남자는 강간혐의로 체포되어 14일간 구금되었다가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석방된 사건
 - 원심은 3년의 구금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의 Lane 판사는 “이러한 종류의 거짓은 가혹하게 처벌되어야 함을 많은 사람에게 알도록 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라는 점과 피고인이 거짓말하게 된 정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18개월로 감경하여 선고

2) R v. Goodwin (1989) 11 Cr App R (S) 194.

다. 독일

○ 무고죄(Falsche Verdächtigung)

-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의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타인의 위법행위나 의 무위반사실을 관청, 고발접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군상관에 대하여 또는 공연히 무고한 경우
-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³⁾

라. 프랑스

○ 무고죄(De la dénonciation calomnieuse)

-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법부, 행정경찰 또는 사법경찰의 관리, 고소·고발을 처리할 적법한 권한 있는 관서 또는 신고대상자의 상사나 고용주에게 불이익한 사법, 행정 및 규율상의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5년 이하 구금형, 45,000유로 이하 벌금형⁴⁾

마. 일본

○ 허위고소죄(일본형법 제172조)

- 사람에게 대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 고발 기타의 신고를 한 경우
- 3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3) 독일 형법 제164조 제1항.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으로 제1항에 기재한 관청 등에 대하여 또는 공연히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의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기에 적합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타의 허위 주장을 한 경우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프랑스 형법 제226-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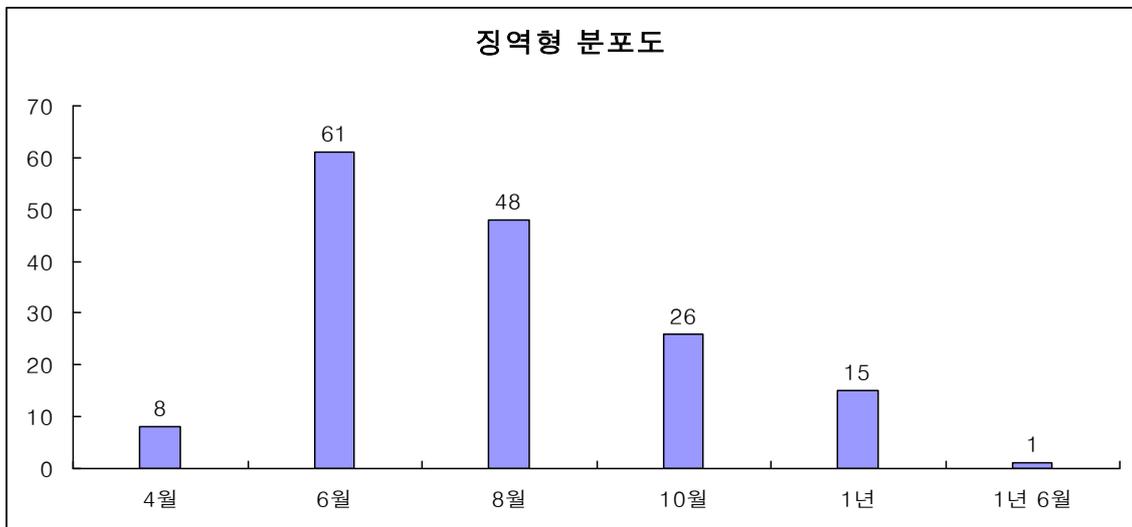
3. 범죄유형화

가. 선고형 분포

(1) 형법상 무고죄⁵⁾

(가) 징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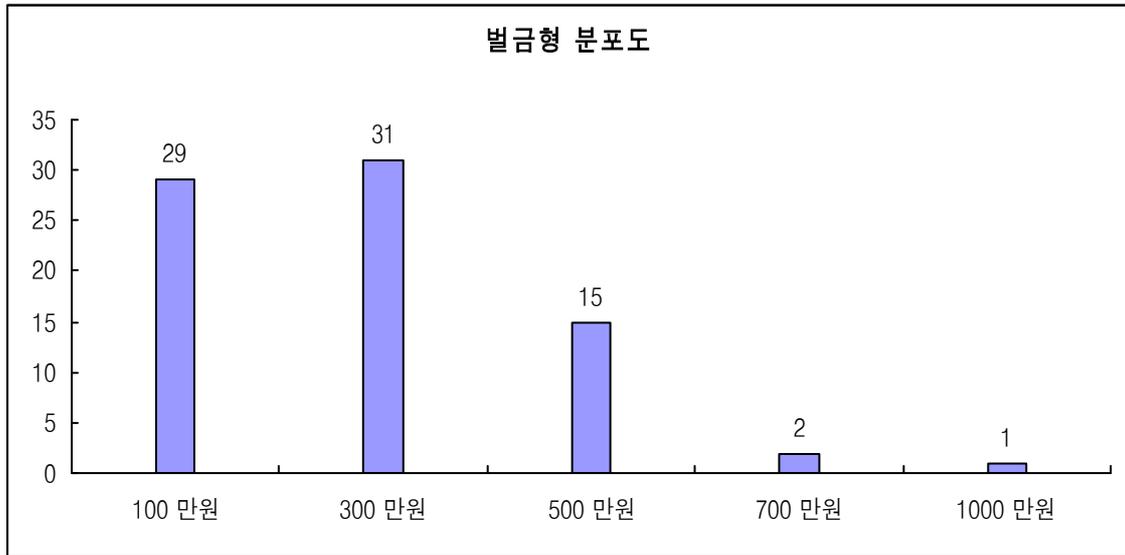
구 분		확정 종국내역			전체	징역형량					
		실형	집행유예	벌금		4월	6월	8월	10월	1년	1년 6월
무고	피고인수	33	126	78	237	8	61	48	26	15	1
	비율(%)	13.9	53.2	32.9	100.0	5.0	38.3	30.2	16.4	9.4	0.6



(나) 벌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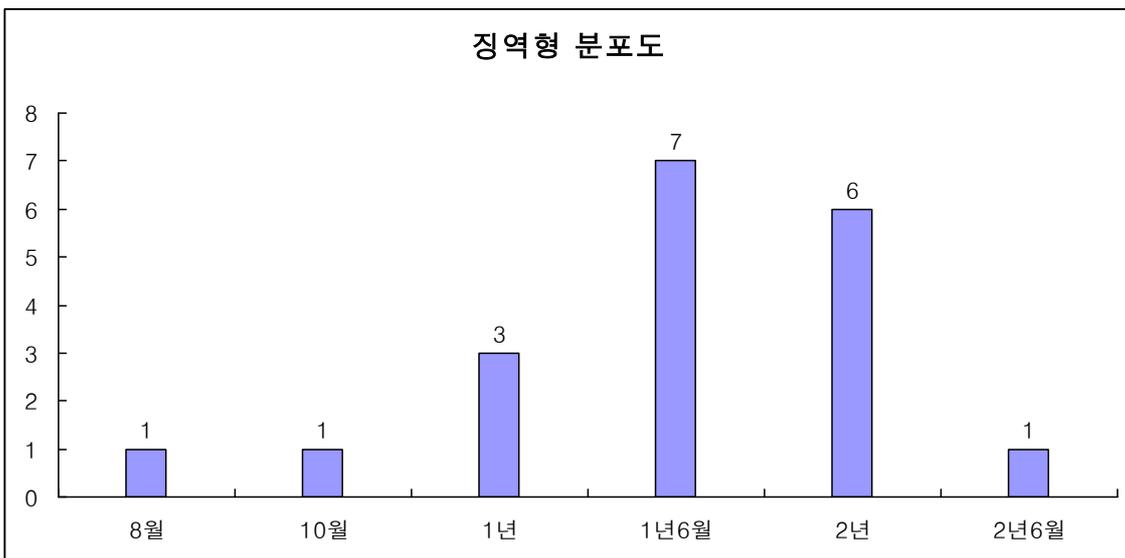
구 분		벌금액 (만원)				
		100	300	500	700	1,000
무고	피고인수	29	31	15	2	1
	비율(%)	37.2	39.8	19.2	2.6	1.3

5)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 단일범(실형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2) 특가법상 무고6)

구 분		확정 중국내역		전체	징역형량					
		실형	집행유예		8월	10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특가법상 무고	피고인수	7	11	18	1	1	3	7	6	1
	비율(%)	38.9	61.1	100.0	5.5	5.5	16.6	38.8	33.3	5.5



6) 분석대상 :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단일범 및 경합범

나. 유형구분

- 유형분류는 기본적으로 형량범위를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형종 및 형량범위, 즉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무고 내에서 무고의 정도⁷⁾나 무고로 인한 피해정도⁸⁾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통계분석 결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정도의 분명한 형량범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양형인자 정도로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형량범위의 포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무고죄 내에서의 추가 유형구분은 시도하지 아니함

다. 무고범죄의 유형화 기준

- 특가법상 무고는 특별구성요건을 통해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상향되고 있어 형법상 무고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형량범위 포섭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 무고의 대상 죄명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함
- 따라서, 특별구성요건의 구분 기준인 무고의 대상 죄명에 따라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무고의 대상 죄명	법정형
제1유형 (일반 무고)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제2유형 (특가법상 무고)	특가법상 범죄 ⁹⁾ 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3년 이상 유기징역

7)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무고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8) 피무고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IV. 형량범위 결정

1. 유형별 형량범위

가. 유형 분류에 따른 선고형 분포

(1) 형법상 무고¹⁰⁾

구 분		확정 종국내역			전체	징역형량					
		실형	집행유예	벌금		4월	6월	8월	10월	1년	1년 6월
무고	피고인수	33	126	78	237	8	61	48	26	15	1
	비율(%)	13.9	53.2	32.9	100.0	5.0	38.3	30.2	16.4	9.4	0.6

(2) 특가법상 무고

구 분		확정 종국내역		전체	징역형량					
		실형	집행유예		8월	10월	1년	1년 6월	2년	2년 6월
특가법상 무고	피고인수	7	11	18	1	1	3	7	6	1
	비율(%)	38.9	61.1	100.0	5.5	5.5	16.6	38.8	33.3	5.5

나. 경험적 접근방식에 따른 분석

- 과거 선고형 중 약 70% ~ 80%에 해당하는 형량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함¹¹⁾
 - 무고범죄의 경우 형량 폭이 다소 좁아 해당 유형에 속하는 범죄를 충분히 포섭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약 90%로 상향

9) 가중수뢰죄(특가법 2조), 알선수재(3조), 불법체포,감금등 치사상(4조의2), 가중 공무상비밀 누설(4조의3), 국고등손실(5조), 가중 약취유인(5조의2), 도주차량(5조의3), 상습강·절도 등(5조의4), 강도상해등 재범(5조의5), 단체등조직(5조의8), 보복범죄(5조의9), 운전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5조의10), 위험운전치사상(5조의11), 가중 관세법위반(6조), 가중 조세포탈(8조), 가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8조의2), 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9조), 통화위조(10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12조), 특수직무유기(15조)

10) 분석대상 : 확정사건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 단일범(실형 및 집행유예 본형 포함)

11)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기준안 제1차 공청회 자료집, 71쪽

- 약 90%의 형량을 포섭하는 경우 무고의 형량은 아래와 같음

유 형	형량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징역 6월 ~ 징역 1년
제2유형(특가법상 무고)	징역 1년 ~ 징역 2년

2. 형량범위 설정시 고려사항¹²⁾

가. 비교법적 검토

-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 형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독일형법 등에 비추어 상당히 중한 형벌에 해당되므로, 입법론적으로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거나 무고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¹³⁾가 있음

나. 무고죄의 사회적 역할

-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가 소송의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한 허위고소,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무고,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한 무고 등이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됨
- 이와 같은 남고소로 인하여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피해와 수사기관에 대한 부담, 사법비용의 낭비가 초래되어 대책 강구가 요구되고 있음
- 고소사건의 대부분은 재산범죄로서 사기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

12)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기준안 제1차 공청회 자료집, 76-77쪽

13) 심재무, “무고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2007/7), 256-257쪽

하고 있고, 이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에 기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무고죄의 엄벌화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음¹⁴⁾
- 결국,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억제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범죄피해자의 고소·고발권을 보장하여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야 하는 필요성도 내재되어 있음¹⁵⁾

다. 규범적 조정

- 제2유형의 경우 적어도 법정형의 하한이 기본 형량범위에 포섭되도록 구성함으로써 가중처벌 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함
- 종전 실무를 토대로 산출된 형량범위를 기초로 형량범위를 설정하되, 사안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규범적 조정을 가미함

라. 유형별 형량범위의 세분화

-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형별 형량범위를 각 영역별 형량범위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처단형을 세분함
- 각 유형별로 3단계 형량범위 제시
 - 감경/기본/가중

14) 윤중행, “피무고자의 승낙과 무고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1호(2006/7), 430쪽

15) 이준걸,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0집(2008/5), 258쪽

V. 양형인자의 결정

1. 양형인자 추출

가. 추출 원칙

- 각종 양형요소와 징역형 형량 사이에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진행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
- 그 외 규범적 관점에서 입법자의 의사, 피해자 보호 등 형사정책적 고려,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 추출

나. 양형인자 추출 결과

(1)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자수·자백
- 규범적 관점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중한 피해결과 야기,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농아자, 심신미약, 동종 누범

(2)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동종 전과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소극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양형인자 정리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중한 피해결과 야기,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행위자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자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VI. 집행유예 기준

1.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출

- 각종 양형요소와 징역형의 집행 여부 사이에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결정 시 참작할 사유를 아래와 같이 추출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리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동종전과 ○ 중한 피해결과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VII. 무고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무고범죄의 양형기준은 무고죄(형법 제156조), 특가법상 무고죄(특가법 제14조)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제1유형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제2유형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중한 피해결과 야기,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자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일반 무고

- 제1유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범행을 의미한다.
- 다만, 제2유형에 속하는 범행은 제외한다.

2. 제2유형 : 특가법상 무고

- 제2유형은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범행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4. 처벌불원 의사(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참회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6.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료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다른 내용의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 예시 :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억울한 심정에서 피무고자를 강간으로 무고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진지한 반성(자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적/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적/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동종전과 ○ 중한 피해결과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①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②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③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④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